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정관

제정 2013. 8. 5.
일부개정 2015. 5. 4.
일부개정 2016. 1. 5.
일부개정 2019. 2. 8.
일부개정 2020. 2. 7.
일부개정 2022. 4. 11.
일부개정 2022. 7. 1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로 표기한다. <개정 2022. 7. 19.>

제2조(소재지) 예방치유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15. 5. 4., 2022. 7. 19.>

제2조의2(지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9.>

② 지역센터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5. 5. 4]

제3조(목적) 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9.>

제4조(사업) 예방치유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 7. 19.>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 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제5조(이익의 제공) ① 예방치유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4, 2022. 7. 19.>

② 예방치유원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19.>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예방치유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0. 2. 7., 2022. 7. 19.>

1. 이사장 1명
2. 삭제 <2020. 2. 7.>
3. 이사(이사장 포함) 15명 이내 <개정 2020. 2. 7.>
4. 감사 1명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 2. 8.>

1. 조직, 예산, 행정의 관리 능력 및 경험
2. 회계,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3.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

4. 사행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

5. 공적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 의식

6. 도박 중독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 경험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0. 2. 7.>

③ 비상임 이사는 사행산업체, 중독관련유관기관, 언론분야, 법률분야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를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사행산업체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9. 2. 8, 2020. 2. 7.>

④ 삭제 <2020. 2. 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0. 2. 7.>

1. 삭제 <2020. 2. 7.>

2. 삭제 <2020. 2. 7.>

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5, 2019. 2. 8.>

⑦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가 추천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비상임 임원의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 5, 2019. 2. 8.>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제7조에 따른 임원을 추천함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 겸 이사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 5, 2019. 2. 8, 2020. 2. 7.>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5, 2020. 2. 7.>

제9조(임원 추천의 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 이사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2. 8.>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방치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7. 1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예방치유원의 임직원직에서 해임 또는 징계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 7. 19.>

제11조(임원의 해임 건의) 임원(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1. 예방치유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2. 7. 19.>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중대히 위반한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 2. 8.>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예방치유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2. 7. 19.>
 6. 제10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9. 2. 8.>
 7. 기타 예방치유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예방치유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2. 7. 19.>
- ② 삭제 <개정 2016. 1. 5, 2019. 2. 8.>
- ③ 삭제 <2016. 1. 5>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 ④ 보선된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임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 2. 8.>
- 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임원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임원 임명이 지연되는 경우 후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2. 8.>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예방치유원의 원장으로서 예방치유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2. 7., 2022. 7. 19.>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2. 7.>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방치유원의 업무, 재산 상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22. 7. 19.>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청렴 의무) ①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재직 기간 동안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영리 행위와 관련된 자에게 고용(용역 수행 포함)되거나 자문을 할 수 없다.

제14조의2(이사장의 겸직제한) 이사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직무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5] <개정 2020. 2. 7.>

제15조(임원의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력지원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의 위임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7., 2022. 4. 11.>

- ② 삭제 <2020. 2. 7.>
- ③ 삭제 <2016. 1. 5>
- ④ 삭제 <2020. 2. 7.>
- ⑤ 삭제 <2016. 1. 5>

제16조(임원의 대우) 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 ② 이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제3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7.>

제18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삭제 <2020. 2. 7.>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전문개정 2016. 1. 5]

③ 이사장이 제2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 5, 2020. 2. 7.>

④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채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제출한 사항
7. 임원의 임명 추천 및 해임 건의, 이사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2. 8.>
8.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20조(서면 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에 의한 서면 결의의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2. 8.>

② 이사회의 의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이 있는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임명 추천 및 해임 건의, 이사장의 임명 제청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 5, 2019. 2. 8.>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예방치유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개정 2022. 7. 19.>

3. 기타 이사회의 안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원은 그 의결에 있어서 재적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회의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 4인 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5>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예방치유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개정 2022. 7. 19.>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2. 임차보증금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채무의 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예방치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예방치유원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예방치유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7. 19.>

1. 예방치유원의 임원 <개정 2022. 7. 19.>

2. 예방치유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개정 2022. 7. 19.>

3. 예방치유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개정 2022. 7. 19.>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예방치유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 7. 19.>

제27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지원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2. 8.>

제28조(결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2. 8.>

제29조(회계연도) 예방치유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 7. 19.>

제30조(회계 원칙) 예방치유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9.>

제31조(사업 계획 및 예산) ① 예방치유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7. 19.>

② 예방치유원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9.>

1. 수입 지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 수입 및 지출의 산출 근거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예방치유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 7. 19.>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 예방치유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2. 7. 19.>

제32조(결산 보고) 예방치유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

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2. 7. 19.>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 계획과 집행 실적
3. 감사 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5.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

제33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감사 할 수 있다.

제5장 조직과 운영

제34조(조직 운영) 예방치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19.>

제35조(직원) ① <삭제 2022. 4. 11.>

② <삭제 2022. 4. 11.>

③ 예방치유원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19.>

제36조(규정의 제개정 등) 예방치유원은 직제, 인사, 보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위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경영공시) 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2. 7.>

제38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13. 8.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센터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촉된 설립위원이 선임하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설립위원이 센터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2013년도 중 센터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도박중독재단이 이 정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센터가 부담한다.

제3조(설립위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1426호, 2012.5.23. 일부개정) 부칙 제2조에 의한 설립위원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주 소	비 고
김교헌		
김영호		
박진경		
우종민		
전영민		
전태진		

부 칙 <2015. 5.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당시의 이사장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및 비상임 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7조의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같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과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정관을 따른다.

② 이 정관 시행에 따라 최초 임명되는 이사장은 개정 당시의 원장이 되며, 그 임기는 개정 당시의 원장의 임기와 같다.

부 칙<2022. 4.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